

	교무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	5-1-2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0. 02. 28.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.

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5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교무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, 개, 폐에 대한 사항
2. 학과설치 개폐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3. 사무기구의 개폐, 변경에 관한 사항
4.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
5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록) 교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무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02. 2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